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. 3. 6 조례 제2806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걷고 싶은 길"이란 안양시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동장이 명명(命名)한 길을 말한다.
 - 2. "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"이란 「안양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에 따라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자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말한다.
- 제3조(걷고 싶은 길 지정) ①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 (命)할 수 있다.
 - ② 동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역사·문화·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제4조(걷고 싶은 길 관리) 걷고 싶은 길의 관리 및 운영은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하고, 걷고 싶은 길 지정 현황을 동별로 관리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업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축제 · 전시 · 음악회 등 문화 · 예술 지원 사업
 - 2. 조경 및 시설 개선·유지·보수 사업
 - 3. 소규모 분수대 및 수경 시설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 사업
 - 4. 보안등, 벤치 등 시설물 설치사업
 - 5.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
 - 6.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단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

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추진 단에서 걷고 싶은 길 관리계획 및 축제·전시·기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「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- 제7조(준용)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